

(별지 제1호 서식)

국 민 각 사 청 구 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1. 청구인	대표자명	전경림 (인)	청구인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2. 감사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 감사청구 제목 : 식약처의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 방기				
4. 감사청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약처는 다수인 민원 및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된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의 필수약품 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식약처는 다수인 민원 및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적받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이 허가되기 전 식약처 차원에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5. 감사청구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래로 국제사회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임신중지를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이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각 국 정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임신중지 건수(2020년 기준)는 약 3만 2천 건에 달함. 2010년 17만건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해 출생아 수가 27만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하고 있으며,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임신중지의 방법은 크게 수술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이 있음.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을 이용한 약물적 방법은 현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 중 하나임. 미페프리스톤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2024년 5월 기준 전세계 99개 국가에서 허가하여 사용하고 있음. 특히 초기 임신중지(임신 10주경까지)의 경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면 95~98%의 성공률을 보이며, 심각한 휴유증 없이 당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				

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가입국 중 임신중지가 합법임에도,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이 공식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그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전한 임신중지가 제약된 상황임. 수술적 방법이 존재하지만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수술적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 수술적 방법에 대해 불안한 사람들은 약물적 임신중지를 원하고 있음.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페프리스톤이 아닌 다른 약물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아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음.
- 시민사회 차원에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수술환경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약물임신중지를 원하고 있었음.' '식약처가 공식적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했음에도 약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음.' '공식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 도입되었다면 여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임.'
-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정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약처 산하에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도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난해 5월 약사 172명, 6월 의사 59명, 시민 1,625명이 3차례에 걸쳐서 식약처에 유산유도제의 필수약품 지정 및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다수인 민원'을 제기하였음. 또한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신속도입, 필수약품 지정 및 한국회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공적 도입을 요구받음. 하지만 식약처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하거나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고 답변함. 이후 11월에 식약처 주관으로 열린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를 요구하는 민원 및 국회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않는 식약처는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에 감사를 청구함.

6. 기타(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제기 유무)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또는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및 기타 감사청구 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명시

관련증빙자료

- 1) 세계보건기구 임신중지 진료 가이드라인(2022)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실태조사 결과
- 3) 미페프리스톤 허가 국가 (출처: Gynuity health project)
- 4)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2024)
- 5) 지난해 다수인 민원 및 식약처의 답변자료
- 6) 유산유도제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질의 및 식약처 답변
- 7)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도입 관련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

감사청구 제목 : 식약처의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 방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